

# 2018년 「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」 인턴 추가모집

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해외산림인턴 사업에 참여할 인턴을 모집합니다.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 인턴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18년 2월 20일

산림청장

한국임업진흥원장

## 1. 사업 개요

### 가. 사업 목적

- 산림분야의 해외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
-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

### 나. 사업 프로그램 종류

- (기업체인턴) 해외산림개발 기업에 파견하여 인턴십 이후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
- (국제협력인턴) 국제기구 및 재외 공관에 파견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으로 기업체인턴과 차별화

### 다. 지원 인원 및 대상

- 모집인원 : 0명

\* 최종 선발인원은 기업 및 국제협력기관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

## 2. 사업내용

### 가. 인턴 모집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5세 이하인 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## ○ 자격조건

- 산림관련 대학(원)·전문대 졸업자(예정자포함), 재·휴학생(5학기 이상 수료자)으로 미취업자
-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
-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파견기간 내 건강, 취업 등 신상변동에 의한 중도포기 우려가 없는 자  
※ 공무원 발령 대기자,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지원불가
-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자(중복수혜 불가)  
※ ‘일모아’ 사이트([www.ilmoa.go.kr](http://www.ilmoa.go.kr)) 가입 후 국비지원사업 수혜여부 확인
- 해외 거주자 및 해외 대학재학생, 해외에서 직접 근무지로 파견되는 경우 및 이중 국적자 참가 불가
-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선발인원의 10%이상 선발
- 파견 예정 기업에 과거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

나. 근무 지역 : 해외산림개발 기업 및 산림관련 국제기구

## 다. 근무 기간

- ’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운용을 기본으로 하되, 업체 근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(4~8개월) 조정·운영 가능
- 기업인턴의 경우 필요시 3개월 내외로 국내근무 가능
-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 :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은 해당기업(기관)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“근로기준법” 준수
  - \*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    -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-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

## 라. 지원사항

- 지원내역 : 체재비, 항공료, 비자발급비, 파견준비비(해외보험비, 언어 교육비, 건강검진비 등)

## ① 해외근무에 대한 지원

지급액/1인당/월(천원)	추가지원금/1인당/1회(천원)		
(급여성) 체재비	항공료(왕복/1회)	비자발급비	파견준비비(년)
800~1,400	한도내 실비지원	한도내 실비지원	1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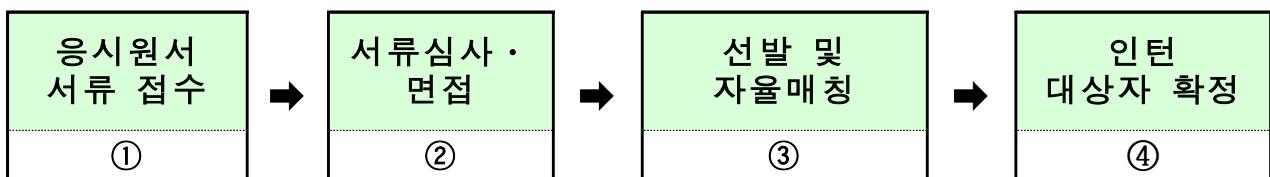
- \* 지원내역은 인턴기간,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상이
- \* 해외 파견준비비(보험료, 교육비 등)는 지원한도액(1,000천원/년) 범위내 실비지원
- \* 항공료(이코노미석 기준 왕복 1회), 비자발급비는 예산 한도내 실비지원
- \* 국제기구 및 국가산림협력사업 관련 기관은 국고보조율 100%
- \* 『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및 정산

## ② 국내연수에 대한 지원(최대 3개월)

국내 연수비 하한액	산출내역
1,573천원/월 (국고보조 상한액 1,100천원/월 지원)	○ 연수비 기준액 - '18년 최저시급 7,530원 × 209시간

- \* 국내연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상한액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
- \* 국고보조율 70%로 1,100천원 지원( $1,573\text{천원} \times 70\% = 1,100\text{천원}/\text{월}$ )
- \* 기업측 부담 30% 외에 추가 연수비 지급은 기업 자율

## 3. 인턴 선발절차



### ① 서류 심사

- 해외인턴 선발기준을 근거로 지원자 및 기업체를 득점 순으로 분류
- 기업추천 인턴의 경우 별도의 서류심사 실시
  - \*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및 자율매칭 실시(기업체 인턴)

### ② 면접 전형(국제협력기관 인턴에 한함)

- 면접 심사 시 외·내부 심사 위원을 5명 이내 위촉
- 언어능력, 기본소양, 전문지식 등 국제기구 파견자로서의 역량을 심사

- 2차 면접 합격자는 해당 국제기구 인턴 파견 후보로 선정됨
    - \* 해당 국제기구 최종 승인 후 파견
- ③ 인턴-기업 간 자율매칭(기업체 인턴에 한함)
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
  - (한국임업진흥원) 인턴지원자의 희망 지원기업에 인턴에 대한 기본 정보, 매칭 기간을 기업체에 통보
  - (기업체) 채용 희망 인턴과 개별 연락하여 매칭 동의를 얻은 후, 매칭 기한 내에 채용희망자를 선발하여 공문으로 발송
  - (인턴) 원하는 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협의
- ④ 인턴 선발
- 기업체의 인턴 확정공문 취합 후 발표

#### 4. 신청 방법

가. 신청 마감일 : '18. 3. 9.(금), 18:00 도착분에 한함

\* 방문, 우편접수 및 이메일만 인정(마감일내 도착분만 유효)

나. 제출처

○ 오프라인 접수 : (07570)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 
3층 해외산림인턴 담당자 앞

\*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

○ 온라인 접수 : kih@kofpi.or.kr

○ 문의 : 02-6393-2762

다. 인턴지원자 제출서류

[공통]

- 해외인턴 응시원서 1부

※ 기업선발인턴 지원자는 기업 측 추천서 사본 추가 제출

-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

- 자기소개서(A4 1~2장 내외, 자유서식) 1부

- 보호자 동의서 및 본인 서약서 1부
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## [해당자]

- 기업추천서(기업추천자에 한함) 1부
-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관련 어학성적 증명서 1부.
  - ※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
- 산림관련분야 기사(산업기사) 이상 자격증 취득자는 사본 1부.
-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
-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서(공공기관 발행)
- 국제협력기관 희망인턴은 영문자기소개서 필수(A4 1~2장 내외, 양식물문)
  - \* 서류 우대 조건
    - 영어성적 우수자(TOEIC 800점, TEPS 730점, TOEFL CBT 230/iBT 90이상 등)
    - 희망 파견국가 언어(회화, 작문 등) 능통자
    - 산림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(기사 및 산업기사)
    -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    -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

### [취업취약계층]

- ①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, 소득 1~3분위)
- ② 장기실업자(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, 졸업일 기준)

## 5. 행정사항

- 모집공고 : '18. 2. 21.(수) ~ '18. 3. 9.(금)
-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: '18. 3. 14.(수)
- 기업설명회 및 인턴-기업 간 자율매칭 : '18. 3. 19(월) ~ 3. 22(목)
  - ※ 변동가능 있음(합격자 개별통보)
- 2차 국제기구인턴 면접 전형 : '18. 3. 20.(화)
  - ※ 변동가능 있음(합격자 개별통보)
- 합격 최종발표 : '18. 3. 23.(금)
- 사전교육 : '18. 3. 말(합격자 별도 공지)

## 6. 기타사항

### 가. 인턴기업에 대한 계약해지

-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인턴참여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
- 인턴참여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부여를 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
- 해당국 노동관계법 등에 저촉하여 인턴을 활용한 경우
- 사전에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을 위반한 경우  
※ 필요한 경우 해당국 또는 국내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

### 나. 기업의 역할

- 인턴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
- 기본적인 노무, 비자, 문화적 적응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실시
- 기업별 인턴관리 직원은 매월 20일까지 인턴참여자의 근로실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「해외인턴 활동 및 관리 보고서」 제출
- 해외인턴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인턴 채용계획 제출
- 현지이슈상황 발생에 대한 전파 및 공유

### 다. 인턴의 역할

- 인턴 참여자에 대한 계약해지
  - 별도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
  -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귀국한 경우
  -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인턴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인턴기업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
  - 인턴기간 중 불법,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
  - 인턴기업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
- 인턴참여자는 인턴활동 종료 후 2주일 이내 「해외산림인턴 참여 결과보고서」 제출
- 인턴 종료 후 취업 시 취업사항 진흥원으로 통보